



독촉일 현재 체납국세

세무서장 인

독 축 납 부 기 한	년 월 일 까지
1. 독축납부기한까지 체납액을 완납하지 않는 때에는 「국세징수법」 제31조 제1항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. 2. 이미 체납액을 납부하신 경우에는 이 독축장을 폐기하시기 바랍니다.	

가상계좌	
이	독촉장 관련 문의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.
※	과세사유, 산출근거, 송달 등
☎	
※	체납관련 납부방법, 납부계획 등
☎	

세 목 명	() 까지 납부할 금액

[illegible]

납 부 서 (수납기관용)

납부번호	분류기호	납부연월	결정구분	세목	발행번호	
성명(상호)			수입징수관 계좌번호			
주민등록번호 (사업자등록번호)	회계연도 과세기간		일반 회계	기획재정부 소관	조 세	
주소(사업장)						

[illegible]

은 행
우체국 등

수납인

납부번호	분류기호	납부연월	결정구분	세목		발행번호
성명(상호)			수입징수관 계좌번호			
주민등록번호 (사업자등록번호)		회계연도 과세기간		일반 회계	기획재정부 소관	조세

[illegible]

은 우체국 행

수납인